

2024년도 제1회 증평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공고

2024년도 제1회 증평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년 4월 9일

증평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임용분야 및 담당직무

임용분야	직급	인원	기간 (근무시간)	직무내용
속기사	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1명	2년 (주35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, 발간 등 관리의정활동 기록관리그 밖에 회의운영 관련 업무 지원

※ 근무예정부서는 증평군의회이며,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

2. 근거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) 제25조의5, 27조, 31조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(이하 "임용령") 제3조의2, 제3장 제2절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, 제35조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」(이하 "인사지침")[행정안전부예규 제274호]
- 「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및 「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」

3. 응시자격 (기준일: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)

1 공통요건

- 응시연령¹⁾: 18세 이상(2006.12.31.이전 출생자)
- 주소지 및 성별 제한 없음 ※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불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

2 직무분야 요건

채용분야	자격기준
속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○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【실무경력 인정범위】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회, 지방의회, 공공기관* 등에서의 속기 분야 실무경력 * 공공기관: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(alio.go.kr)에서 지정된 기관</p>
<p>※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▶ 반드시 경력증명서(발급담당자 확인 및 기관 직인 날인) 상으로 근무사항(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 등)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함.▶ 경력증명서의 업무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직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(예: 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를 첨부하여야 함▶ 전임 근무(8시간/1일)가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, 근무시간(40시간/1주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	

1) 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제8조

4. 보수수준 등

- 근무시간: 주35시간(1일 7시간, 주 5일 근무)
- 보수수준

채용분야	직급	연봉	비고
속기사	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	26,927천원	주35시간 근무 기준

- ※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13의 9급(상당) 연봉 상한액의 60%를 기준으로 하되, 「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의 연봉책정 방법에 따라 임용예정자의 능력,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
 -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그 밖에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 등 관계법령 준용

5. 시험방법

1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(합격) 또는 부적격(불합격) 여부 결정
- 합격자 결정: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
 - ※ 응시원서 접수결과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

2 공직자 인적성 검사

-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인적성 검사 실시
 - ※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검사요령 등 안내
- 결과분석 자료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층면접 참고자료로 활용

2차 시험(면접시험)

《 면접시험 평정요소(5개 항목) 》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.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| 2.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|
| 3.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| 4.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|
| 5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| |

- (평가방법)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,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'상(3점)', '중(2점)', '하(1점)'로 평정
 - (평가방식)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·응답
 - (불합격 기준)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'하'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
 - (최종합격자 결정)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의 모든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
 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 - (추가합격자 결정)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*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* 사정: 퇴직, 임용 포기, 합격 취소, 임용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

6. 시험일정

공 고	1차 서류전형	2차 면접시험	최종합격발표
'24. 4. 9.(화) ~ '24. 4. 19.(금)	(시 험 일) '24. 4. 23.(화) (합격발표일) '24. 4. 24.(수)	(시험공고일) '24. 4. 24.(수) (시 험 일) '24. 4. 26.(금)	'24. 4. 30.(화)

※ 합격자 발표: 증평군의회 홈페이지(<https://council.jp.go.kr>) 공고 및 개별 통보

※ 임용예정시기: 2024. 5.

7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일시 및 방법

○ 접수일시: 2024. 4. 17.(수) ~ 2024. 4. 19.(금)

09:00~18:00 [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]

※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 등)을 출력하여 사용

○ 제출방법: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

- 주 소: (27919)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 28, 증평군의회

- 문의전화: 의회사무과 의정팀(☎043-835-3183)

※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(빠른 등기)까지 유효하며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
※ 우편봉투에 '2024년도 제1회 증평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' 표기

나. 응시수수료(수입증지 구입비)

○ 응시수수료: 5,000원

○ 방문접수: 응시원서에 증평군수입증지를 첨부(날인)하여 제출

- 증평군청 1층 민원과(수입증지 창구)에 방문하여 구입

-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

○ 등기우편 접수: 가까운 우체국에서 응시수수료 금액에 해당하는 우체국통상환증서("받을 분"은 공란)를 구입하여 동봉할 것

○ 응시수수료 면제자(해당 증명서 첨부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-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-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

다.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,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. 단,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, 허위사실 기재, 증명서 위조,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

중평군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-1호

- 응시원서 접수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.

8. 제출서류

구분	내용	비고
1. 응시원서	◦ 별지 제1호서식	필수
2. 이력서	◦ 별지 제2호서식	필수
3. 자기소개서	◦ 별지 제3호서식	필수
4. 직무수행계획서	◦ 별지 제4호서식	필수
5. 경력(재직)증명서	◦ 별지 제5호서식	필수
6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	◦ 별지 제6호서식	필수
7.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	◦ 별지 제7호서식	필수
8. 주민등록표 초본 (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)	◦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※ 별지 제8호서식 제출 시 초본 생략	필수
9. 최종학력증명서	◦ 졸업증명서(대학교 이상) 또는 재학증명서 (사본 가능)	해당자
10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	◦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	필수
11. 기타 증빙서류	◦ 관련 자격증 사본 등	필수

[붙임] 결격사유

•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•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
• 「공직선거법」 제266조(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)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,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, 제2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(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) 또는 「정치자금법」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,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,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,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.

1.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(제53조제1항제1호- 국가공무원, 지방공무원)

• 「정치자금법」 제57조(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) 제45조(정치자금부정수수죄)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,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,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「공직선거법」 제266조(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)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,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.

• 「병역법」 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,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.

1.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
2. 징집·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
3.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

•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)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.

1. 공무원이 될 자격